

공시송달공고

「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」 제10조에 따라 행정처분(허가취소) 공문을 송달하려 하였으나,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 절차법」 제14조(송달)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- 아 래 -

- 1. 제 목: (명동 거리리가게)도로점용허가 행정처분 알림
- 2. 법적근거: 「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」 제10조
- 3. 공시송달 대상

연번	허가번호	성명	주소	비고
1	명동길-24-A	공*덕	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29번길	
2	명동길-29-A	최*호	경기도 의정부시 진등로 31	

- 4. 공고기간: 2023. 11. 14. ~ 2023. 11. 28.(14일간)
- 5. 공고 및 게시장소: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
- 6. 공고내용

- 「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운영규정」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.

- 처분내역

연번	허가번호	성명	점용장소	처분내용	사유
1	명동길-24-A	공*덕	명동길 20	허가취소	운영자 사망
2	명동길-29-A	최*호	명동길 26	허가취소	운영자 사망

-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, 처분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위 공고문에 대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청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(☎02-3396-6058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2023. 11. 14.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